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24일,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2.25.) 상정/제안설명/
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3.10.) 상정/축조심사/의결
(수정가결)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3.11.) 상정/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선교의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2021년에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기후위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기후위기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으나, 기후위기의 취약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성별영향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및 성평등 이슈 및 성인지적인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성별·연령·지역·장애·직업 등 다양한 삶에 미치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함에 있어서, ‘성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에 대해서도 고려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관련 정부의 적응대책에 성인지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개정안은 기술개발 활동조사 실시 시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에 ‘성별’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후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서 인력구조 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는 한편, 성인지적 접근을 가

능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최형두위원)

성별을 포함한 기술개발 활동조사에 관한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조사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례를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성별을 포함한 기술개발 활동조사에 관한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조사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례를 신설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기술개발 활동조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개발 활
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부칙 <u>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기술개발 활동 조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분야별”을 “성별·분야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개발 활동조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관한 기술개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 성(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분야별</u> ·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2. <u>성별</u> · <u>분야별</u>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